

2단계 + 일부 방역수칙 조정

(2.1. ~ 2.14.)

English

GO



질병관리청



코로나19

<p>코로나19 현황</p> <p>사회적 거리두기</p> <p>몸으로</p> <p>집으로 달려가면 가장 안전합니다</p>	<p>확진자 현황</p> <p>주요집단사례</p> <p>확진자 추세</p> <p>부산시 상황보고</p> <p>일자별 현황</p>	<p>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</p> <p>마스크 착용 의무화</p> <p>마스크 사용 캠페인</p> <p>예방행동수칙</p> <p>자가격리자 행동수칙</p> <p>가족/동거인 행동수칙</p> <p>코로나19 신고</p>	<p>지원정책</p> <p>난지원금(총괄)</p> <p>부산형 플러스지원금</p> <p>취약노동자 자가격리 피해보상금</p> <p>정부지원</p> <p>인터넷 방역단</p> <p>클린존 (방역안심시설)</p>	<p>코로나19 알림</p> <p>공지사항</p> <p>코로나19 Q&A</p> <p>마스크 의무화 Q&A</p> <p>임시선별검사소</p> <p>선별진료소</p> <p>부산 국민안심병원</p> <p>부산 호흡기전담클리닉</p> <p>코로나19 심리지원</p> <p>홍보(서식·앱) 다운로드</p>

2월 1일 (Mon) 13시30분 발표



지역	중구	서구	동구	영도구	부산진구
금일	-	-	-	-	-
누적	27	62	84	66	301
동래구	남구	북구	해운대구	사하구	금정구
1	-	-	7	-	3
236	195	174	233	183	164
강서구	연제구	수영구	사상구	기장군	기타
2	-	-	-	-	1
77	133	127	189	51	472

21. 2. 1.(월) 일일상황보고

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보도자료 전문 (21. 1. 31.)



코로나19 전국 현황 자세히 보기



사회적 거리두기

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비교표



(원칙)2단계 + 일부 방역수칙 조정

2. 1.(월) 00시 ~ 2. 14.(일) 24:00

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① 모임·행사	
사적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기타 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 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▶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,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 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 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준수
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	
공통수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 * 일일 2회 이상 환기·소독 실시(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)
유흥시설 5종(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집합금지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이상 거리두기 준수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 (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* 별도의 룸 구조 시설은 룸 별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가 가능한 인원만 수용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내 스탠딩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식당·카페 (무인카페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식당·카페 모두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홀덤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집합금지
실내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* 별도의 룸 구조 시설(스크린골프장 등)은 룸 별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가 가능한 인원만 수용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제한 ▶ 타 지역·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▶ 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▶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▶ 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▶ 부대시설 중 식당·카페의 경우 식당·카페 수칙 적용 ▶ 탈의실·오락실 등의 시설은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학원·교습소(독서실 제외)/직업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월80 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
결혼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준수
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준수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목욕장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영화관/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오락실·멀티방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(최대 4명까지),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놀이공원·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
아·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백화점·대형마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▶ 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▶ 집객행사 금지 ▶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
마트·상점 (300㎡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
편의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 -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
포장마차 (음식조리·판매시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
③ 기타 다중이용시설	
숙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 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파티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 ▶ 시설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(등록·미등록 불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▶ 체험 시 영업(관리)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
국공립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 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	▶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
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▶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교통시설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▶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스포츠 관람	▶ 10% 이내로 관중 입장
등교	▶ 밀집도 1/3 준수 (고교 2/3)
종교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직장근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▶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▶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

※ 중점관리시설의 경우,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‘원스트라이크 아웃제’ 실시
(유흥시설 5종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)

행정명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,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(공고2020-339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9. 4.-별도 해제시까지 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40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12 ▲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1-31호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2021.1.25 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1-37호, 사회재난과) : 2021.1.31
위 반 시	시설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문의처

구분	소속	담당자	연락처
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마스크 착용의무화 총괄	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	신혜진	☎ 888-3334

구분	소속	담당자	연락처
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식당, 카페	보건위생과	김범현	☎ 888-3374
목욕탕·사우나		김의곤	☎ 888-3395
이·미용업			
노래연습장	영상콘텐츠산업과	윤진수	☎ 888-5161
PC방, 오락실		김지연	☎ 888-5151
영화관, DVD방		최연희	☎ 888-5141
멀티방		김지연	☎ 888-5151
콜라텍	재난대응과	정우철	☎ 888-2955
공연장	문화예술과	박선옥	☎ 888-5042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소상공인지원담당관	신현숙	☎ 888-4757
상점·마트·백화점		조성란	☎ 888-4954
학원, 독서실	교육협력과	김민경	☎ 888-2005
스터디 카페	교육협력과	김민경	☎ 888-2005
실내체육시설	체육진흥과	지현경	☎ 888-3455
직업훈련기관	일자리창업과	최그림	☎ 888-4385
장례식장	노인복지과	김효진	☎ 888-3275
결혼식장	여성가족과	성중학	☎ 888-1604
대중교통	버스운영과	김강식	☎ 888-3962
	택시운수과	김현준	☎ 888-3997
	도시철도과	이서현	☎ 888-4084
의료기관	보건위생과	박종태	☎ 888-3425
약국		김진숙	☎ 888-3382
요양시설	노인복지과	하도훈	☎ 888-3274
주·야간보호시설		이동현	☎ 888-3271
콜센터	투자통상과	조용준	☎ 888-4442



마스크를 벗는 순간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10편]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의 하루



라바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해요!

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9편] 부산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생겼DAY~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8편]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면 생기는 일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7회] 우리의 지구를 부탁해 똑똑한 슬기로운 집콕생활!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6편] 부산 BMW 믿어도 되나??

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5편] 힘내세요 만덕씨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4편] 역학조사관의 오해와 진실! 부산시 역학조사반은 어떤 일을 할까?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3편] 뭐? 이거벗으면 과태료 부과?! 마스크 의무화의 모든 것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2편] 동선 숨기고 자가격리 거부? 구상권에 관한 모든 것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1편] 열나고 기침도 난다! 나도 혹시 독감? 코로나?

